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3항은 “언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 단서는 역으로 말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고소·고발된 사건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보도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성범죄 고소·고발 사건을 보도할 수 있는가? 그 예외적인 사항만 정리하면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보도하거나 보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1. 공인과 성범죄에 대한 정의 및 분류

공인의 성범죄 혐의 보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공인과 성범죄에 대한 개념 규정이 정확하게 내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공인 유형과 성범죄 유형과의 조합에 따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정도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공인의 성범죄에 대한 보도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발표자는 강간, 강제추행으로 대표되는 성범죄만 언급할 뿐 성범죄의 정의 및 유형들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윤가현(2006)은 성범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성폭력이다. 여기에는 폭력이나 강제성이 수반된 강간이나 강간 미수, 강제추행, 권위나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이나 학대, 근친관계 성폭력,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상대방의 신체부위에 밀착하여 추행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성매매, 음란한 공연 등 성욕발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다. 세 번째는 혼인빙자 간음죄, 중혼, 스와핑 등 혼인과 관련된 범죄다. 네 번째는 수간,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 및 성기 노출, 타인의

사생활 침해보기, 속옷 등을 훔치는 행위 등 변태성욕 행위이다. 다섯 번째는 성희롱 등이다.¹⁾

성범죄 분류를 볼 때 강간과 밀집된 공간에서 상대방 신체부위 부착이 갖는 성범죄 간의 범죄 경중이 다르다. 성범죄 중에서 그 범죄행위가 중할수록 그 범죄 보도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커지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알권리 역시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범죄혐의라 할지라도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도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성범죄 혐의자의 영향력과 저명성이 높을수록, 고소·고발한 범죄가 중대할수록 고소·고발자의 무고죄 및 명예훼손에 대한 부담 역시 커진다. 피해자인 고소·고발자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도 고소·고발을 하고 있고, 그 성범죄의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고소·고발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들이 상당한 정도의 유죄입증 요인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고소·고발 단계에서도 국민들의 알권리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성범죄 혐의보도의 알권리가 크다고 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익명보도 원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유죄 확정 전에는 범인이나 성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죄 확정전이라도 성범죄 혐의자의 신분이 무엇이나에 따라 익명보도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정확한 개념뿐 아니라 공인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 공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영향력이 다른 만큼, 공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클수록 그의 행위가 미치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커지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이익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발표자는 공인 분류에 따른 성범죄혐의자에 대한 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성범죄혐의보도에 대해서 유죄 확정 전에는 보도자체를 금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과 그가 행한 성범죄행위의 비중, 고소고발에서 제시된 유죄확정에 관련된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명으로 보도할 수 있다고 본다.²⁾

박용상(1997)은 미국 판례법상의 공인분류에 따라 공무원, 전면적 공직인물, 논쟁사

1) 윤가현 (2006, 8월). <성범죄의 심리학적 접근>. 2006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서울: 서울대학교.

2)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이다.

안의 공적인물, 제한적 공적인물, 타의에 의한 공적인물, 사인으로 분류하고 있다.³⁾ 반면 이부하(2012)는 공직자, 공적인물(전면적 공적인물, 제한적 공적인물), 비자발적 공적인물로 분류하고 있다.⁴⁾

본 논의에서는 이 두 가지의 분류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먼저 선거직을 포함한, 그러나 모든 공무원을 포함하지 않고 정부의 행위에 실질적인 책임 또는 통제권을 갖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자, 둘째, 저명성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공적인물(전면적 공적인물과 제한적 공적인물로 분류), 셋째, 자의에 의해 특정한 공적 논쟁에 영향력을 갖고 관련한 논쟁사안의 공적인물, 넷째, 유명인사의 가족, 범죄의 피해자 등 자발적으로 공적논쟁에 참여하지 않은 비자발적 공적인물(타의에 의한 공적인물)로 분류했다.

2. 공인의 성범죄 혐의보도

본 논의의 핵심은 공인들이 성범죄혐의로 고소·고발당하였을 때 보도할 것인지의 여부와, 보도한다면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에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공인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 성범죄 혐의의 경중, 고소·고발 때 제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공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성범죄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공인의 명예 및 사생활보호 측면보다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유죄확정이 명백하고, 아주 극악한 강간폭행 치사 사건 등 공적 관심사가 지대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명보도가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인의 경우에는 공인의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가 우선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가 내에서 명백하게 중요한 지위를 보유하고 국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과 통제권을 가진 공직자는 공적 관심사의 해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서, 그 자격과 능력에 대해 일반국민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이부하, 2012,

3) 박용상 (1997). <언론과 개인법익>. 조선일보사. 282-29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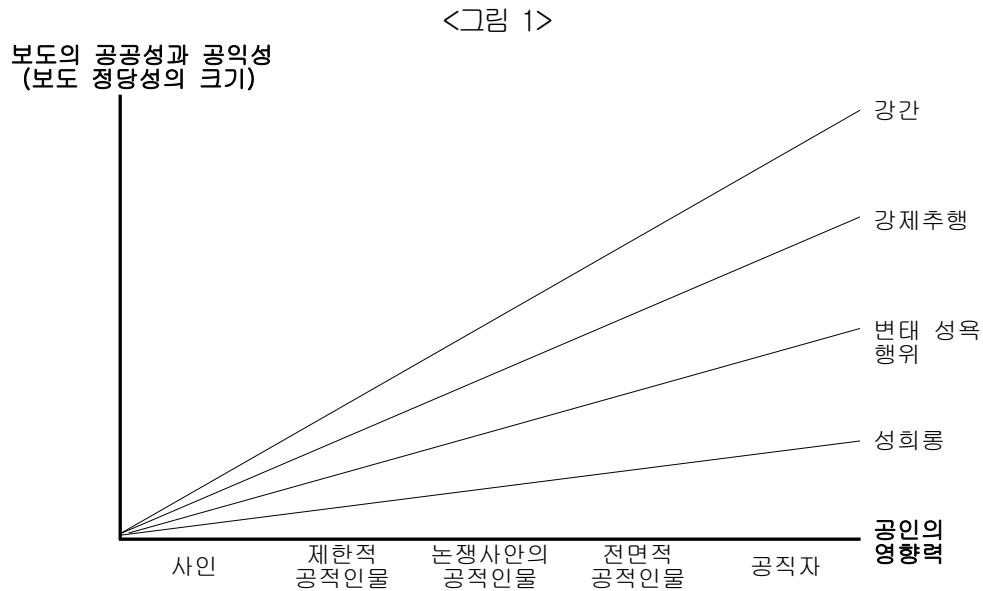
4) 이부하 (2012). 공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서울법학>. 20권 1호.

51쪽). 따라서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는 성범죄혐의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국민의 공적관심사가 될 수 있다.⁵⁾ 그러나 공직자라 할지라도 성범죄 행위가 경미하거나, 고소·고발인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직자의 직위 또는 직무 행위와 관련 없는 사인간에 발생한 성희롱 등의 경우 좀 더 엄격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다. 특히 성희롱 위법행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의사에 반함’은 행위 이후에 구성되는 관계로 입증의 어려움이 있고, 성희롱이 행해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어 위법성에 대한 다툼이 많다. 또한 성희롱 자체는 사회적 관심사이긴 하지만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는 그 위해가 크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익명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공인의 분류상 전면적 공적인물은 공직자의 수준에 준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지만 전국적인 지명도나 인지도를 갖지 않은 제한적 공적인물 및 논쟁사안의 공적인물의 경우에는 성범죄행위가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킬 정도가 아닌 한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비자발적 공적인물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인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 성범죄 혐의의 경중, 고소·고발 때 제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성범죄와 공적인물과의 조합에 따른 공적관심사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영향력이 큰 공인일수록, 그리고 성범죄의 정도가 심할수록 성범죄 혐의보도의 정당성 및 실명보도의 정당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5) 공직자는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크고, 언론매체에 접근할 기회가 많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특정 공직 선택 및 공직 논쟁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보도와 논평의 대상이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공인이론의 중요한 논점이다.



3. 결론

공인의 성범죄 보도는 공인의 성격과 성범죄 성격에 따라 국민의 정당한 관심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공인의 영향력에 따른 분류와 성범죄의 분류를 토대로 공인의 성범죄 혐의의 보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저명하면 할수록, 그리고 성범죄의 죄질이 나쁘면 나쁠수록,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면 할수록 고소·고발 단계의 성범죄혐의 사실을 보도할 수 있는 정당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인의 영향력이 클수록, 고소·고발한 성범죄 내용의 사회적 관심이 클수록, 고소·고발자 역시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의 위험부담이 커진다. 최악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 될 수 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공적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피해자인 고소·고발인도 ‘비자발적 공적인물’이 된다. 최소한 재판 결과 무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고소·고발인은 피해자 신분으로서 그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인의 사생활도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죄가 확정되어 고소·고발인이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논쟁사안의 공적인물’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인도 정당한 공적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고소·고발 내용을 언론에서 보도해주길 원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이면서 약자인 그들은 억울함이나 피해를 사회에 호소하고 싶어할 것이다. 특히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고소·고발자의 위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고소·고발을 시도한 것은 그만큼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⁶⁾ 발표자는 피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성범죄혐의 보도로 인한 공인의 명예훼손 관점에서 보고 있다. 관점을 바꾸어, 공인들에 비해 약자이자 성범죄 피해자인 고소·고발인의 관점 및 사회정의론 관점에서 본다면, 공인의 성범죄 혐의 보도에 대한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보도의 자유 보장만큼이나 언론 역시 보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언론은 고소·고발 사건에 제시된 정황뿐 아니라 증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보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법원 역시 공인의 성범죄혐의 사실 보도에 대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 좀 더 엄격하게 대응함으로써 언론의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결과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 언론은 피해자가 된 공인들에게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하고 사건을 종합 정리보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독자에 대한 예의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뉴스에 있어서 시의성과 속보성은 뉴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흥미거리와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잘 갖추고 있는 공인의 성범죄혐의 보도는 여전히 상품가치가 높은 뉴스다. 이미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뉴스는 결과를 알고 보는 축구경기와 같다. 그리고 그것은 단막극 같은 이야깃거리다. 반면 공인의 성범죄 사건은 고소·고발 단계부터 재판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생산해 낸다. 일종의 연속극 같은 것이다. 다양하고도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뉴스 상품을 멈출 언론들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익명의 주인공으로 연속극을 쓸 수 있을까?

모두가 모두에 의한 뉴스 생산시대에 언론이 익명보도를 한다고 해서 익명성이 보장될지도 의문이다. 무수한 추측성 보도들이 생산될 것이고 그 유탄으로 오히려 무고한 공인들이 거론될 수도 있다. 오히려 정확한 사실보도와 탐사보도를 통해 난무하는 의혹들을 잠재우는 것이 더 타당한 보도일지 모른다.

6) 물론 재산상의 이익을 노리고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재판과정에서 밝혀내야 할 일이지 이것을 이유로 고소·고발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